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215

제 출 일 : 2023. 7. 5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남양주의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명확한 상징물 체계를 정립하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양주시 상징물 조례의 목적 및 종류(안 제1조～제3조)
나. 시기 및 상징물의 사용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7조)
다.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8조～제10조)
라.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마. 위반 시 조치 사항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)
나. 입법예고
- 예고기간: 2023. 6. 1. ~ 2023. 6. 21.(20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다. 부서협의
- 협의기간: 2023. 5. 11. ~ 2023. 5. 23.(12일간)
- 협의결과
· 성별영향평가(여성아동과): 개선사항 없음
·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원안동의
· 규제심사 대상 여부(법무담당관)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남양주시조례 제 호

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상징물”이란 남양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상징물의 종류)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기: 별표 1
2. 문장: 별표 2
3. 도시브랜드: 별표 3
4. 캐릭터: 별표 4
5. 시가: 별표 5
6. 시의 나무: 소나무
7. 시의 꽃: 개나리
8. 시의 새: 크낙새

제4조(시기)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

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.

제5조(문장의 사용 등)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
1.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
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

3.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

4. 그 밖에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(별지 제1호서식)에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
2.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,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

3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 등

제6조(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)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상징물의 관리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 2호부터 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.

제8조(상징물의 관련사업 등) ① 시장은 상징물을 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물품이나 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

2.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용

3. 상징물을 용한 수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 할 수 있다.

제 조(상징물의 사용승인) ① 영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지 상징물을 용하여 물품 등을 제 하거나,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 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 , 사용목적에 위 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상시 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소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용 등) 제 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 를 부하여야 하 사용 및 부방법, 감면 등은 공유

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 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
2.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
3.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, 위원장이 부 이한 사유로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한다. 이 경우, 위 위원은 특정 성( )이 위 위원 수의 10분의6을 과하지 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의 공무원
2. 시의회 의장이 추 하는 시의원
3.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 이 있는 사람

④ 위원회는 안 이 발 하면 성하고,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 ,
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 으로 개의하고, 출 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결한다.

위원회의 사무를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되,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.

위원회에 출 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위에서 수당 등을 지 할 수 있다.

제12조(위반시 조치사항) 시장은 제 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 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지한다.

1. 남양주시시기조례

2. 남양주시마 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시기조례 및 남양주시마 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한 상징물 사용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다.

소관 관 과		기 관
입안자	관 과장 위 성명	기 관 이 기
	장 위 성명	기 장 성 신
	담 당 자 성명 전	하 주 용 (031-5 0-206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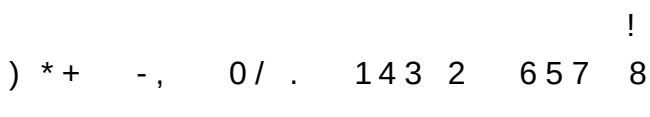

Þ

àßá Þ

RâN àßá RâN ›Šã- uä - L…C åLI #&-
R¾ˆ7 æZ ç 9 èêéë> @RâN ›Šã- ìJ ˆíb îï!
ˆ ^#&- ´ð7 ñò A& š< ; K%… ¹^. 1—Î! óô7
' !^# ' 9 ÷öõ ¸lø ùz ¹> @

#!"

Vúû ïy ü$ þý z - #1 ÿJ Ýn•…#
& ¹ Q&I k2 ¸| k 1 , > ²6 T
5 7 ˜² s ùz ? éë> @
? p àßá- J h % ´C qL U Î VVC úú•
^# \Réë> @VV » Vúû- V C 9 ‹7 - . 1úú
o» J Vúû- ú b ³ Q& SC æ2 ; _ ` a
! ^# " àßá- ˆ]7 '+> @

&

	9 X z	!	ˆ	Y	9 U

G &

=	! U	
	z	
	Š " # X	
	Y	
	— … % $ &	
U N %'$		
U N š		
U N ' !		
U N • N æ ¾ ! ^ #		
f %'$? H j þ :Q S T U N(=& *+)> @ " # X = F & [, M		
- /0z. 1 2 è - no FUN¡3& 1UÄz4ø U© 2 i - no Fi 4 ó4© 1UN¡3& 1UÄz4ø U© " ó		

&

=	! U	
	z	
	Š " # X	
	Y	
	— … % $ &	
U N %'$		
U N š		
U N ' !		
•n•N æ ¾ ! ^ #		
•n U		
f %'$? H j þ GQ ST UN(•n =& *+)> @ " # X = F & [, M		
- /0z. 1 2 è - no FUN¡3& 1UÄz4ø U© 2 i - no Fi 4 ó4© 1UN¡3& 1UÄz4ø U© " ó		

E N 5 ¡ & ‡ ó U &

6 R `¼ /

%' $? H R 7 U : 8 ‹

‡ ó ö P R

˽ - 9 - E N 5 ¡ Q + H E N 5 ¡ & - (ˆ

: - 9 - • N › ! : u ! K ^ # P R é 4

“ ! ^ # 5 ¡ , | ‰ n o

‡ ó U

H R ^ # + E N ê Š 8 ‹

(ˆ z

< ; 3 =

; 2 0 ; ; <;>= A?@ ;

; B CD$D E& F 4 65 7 8 : 89 GH)(*,+ 'D$ %JI F)(*,+'# G 3 $ KL MN. O PQ -.R / S?@ ;

MN ;)(*,+' PQHT -. / C;

; PQHT / D 0 1 023 C; U;

I) V W . X

Y \] I):Z[X %- 0 ; ; ; ^`_

b a

4c I)VW. 2d 3 0 ; ; ; e < 3 0 ; ; ;

f 32 g 4 @jkhi dml @jW n qxxvonnyyy;tzr;pu;sw

{|m> 0 0 d ~}m> 0 0 d rzq,••0 <•suw•€;sw r…„f

:†‡H g4 ^

저장 : 이연희 / 여성아동과 (2023-05-23 11:13:42)

등록번호	여성아동과-14428
등록일자	2023. 5. 19.
결재일자	2023. 5. 19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여성정책팀장	여성아동과장	복지국장
이연희	김일녀	이진춘	전결 2023. 5. 19. 최재동

협조